

# 자율주행차의 제조물 책임 토론문

---

■ 윤복남 변호사

■ [bnyun@hklaw.co.kr](mailto:bnyun@hklaw.co.kr)

# 1. 소프트웨어의 제조물책임 여부

## 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. 11. 3. 선고 2003가합32082 판결

이 사건 MS SQL 서버가 제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. 살펴건대, 서비스 또는 물건을 만드는 방법 등과 같은 단순한 정보는 타인의 편의를 위한 유·무형의 산물로서 그 결과가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. 그러나 피고 마이크로소프트는 MS SQL 서버를 전자서적과 같은 형태로 씨디-롬(CD-ROM)이나 디스켓 등과 같은 일정한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공급하거나, 웹 사이트를 통하여 라이선스를 부여하고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게 하는 형태로 공급하는데, 전자의 경우 저장장치와 소프트웨어를 일체로서의 유체물로 볼 수 있어 그 소프트웨어 역시 제조물로 볼 수 있고, 후자의 경우 디지털 형태로 공급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하드디스크 등과 같은 다른 저장 매체에 저장되어야만 사용할 수 있고 일단 소프트웨어의 공급이 완료된 시점에서 결국 그 소프트웨어가 일정한 저장매체에 담겨져 있는 상태로 되며, MS SQL 서버는 대량으로 제작·공급되는 것이어서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는 제조물에 포함시키는 것이 제조물책임법의 제정 목적에도 부합되므로, MS SQL 서버를 제조물로 봄이 상당하다.

## 2.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조물책임 관련 토론(1)

- 자율주행차 사고의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 보다는 ‘센서 기술’의 한계가 더 클 것이고, 제조물책임 대상이 될 것이라는 오병철 교수님 견해에 동의함
- 나아가, 급발진 사고과 대비하여 자율주행차 제조업자의 ‘배타적 지배’가 더 쉽게 인정되리라는 오병철 교수님 견해에도 동의함
- 그러나, 이는 급발진 사고와 대비되는 ‘상대적 평가’에 불과함.
  - (1) 정책적 요인 - 자동차 산업육성 위하여 법령기준의 완화 가능성
  - (2) 결함 입증 정도 - 현행 과학기술 수준의 한계 항변
  - (3) 소비자의 요구 - 위험에 대한 기피/선호 정도에 따라

## 2.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조물책임 관련 토론(2)

-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발생시의 책임대상
  - (1) 자동차 운전자 책임, 운전자의 일반불법행위 책임
  - (2) 제조업자의 제조물책임 / 공작물 책임(무과실 책임)
  - (3) 정부의 책임 여하 - 낮은 수준 차량에 대한 과도한 운행허가
-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의 위험관리를 할 것인지 과제
  - 위험도를 높게 관리하면, 안전도는 높아지나, 산업발전 저해
  - 위험도를 낮게 관리하면, 안전사고 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여하
- 향후 정책과제
  - (1) 자동차 제조업자의 제조물책임의 정도
  - (2) 보험제도의 신규 도입(제조물책임보험+자동차손해배상보험)

## 2.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조물책임 관련 토론(3)

---

현행법상 '자율주행자동차' = 레벨 3이상 완전자율주행자동차를 의미함

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의3호 "자율주행자동차"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.

제27조 제1항 단서 "다만,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·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려는 자는 허가대상,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, 기능해제장치, 운행구역, 운전자 준수 사항 등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운행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한다

## 2.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조물책임 관련 토론(3)

###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

**제26조의2** (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) ①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"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운행요건"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.

1. 자율주행기능(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하는 기능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수행하는 장치에 **고장이 발생한 경우 이를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**를 갖추는 것
  2. 운행 중 언제든지 **운전자가 자율주행기능을 해제할 수 있는 장치**를 갖추는 것
  3.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운행구역에서만 운행할 것(자율주행기능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  4. **운행정보를 저장**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는 것
  5. 자율주행자동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(標識)를 자동차 외부에 부착할 것
  6. 자율주행기능을 수행하는 장치에 **원격으로 접근·침입하는 행위를 방지**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기술이 적용되어 있을 것
  7.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
- ② 제26조제1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을 대행하는 자(이하 "성능시험대행자"라 한다)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안전운행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게 한 후 안전운행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운행허가를 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운행요건의 확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## 2.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조물책임 관련 토론 (3)

---

### ■ 현행 법규에 대한 향후 과제

(1) 레벨 3 이상의 '완전자율주행차'에만 적용됨

(2) 안전확보를 위한 구체적 조치 검토 필요함 (ex. 캘리포니아주법)

(3) 향후 실제도로 운행시 적용될 위험기준에 대한 토론 필요

- 법령기준, 보험정책, 입증책임 등 다양한 측면

감사합니다